

충청북도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3년 1월 27일

· 회부일자 : 1993년 1월 29일

3. 개정 이유

· 건축 관련 법령의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지구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축 법령의 조문을 개정하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을 준수하고자 함.

4. 주요 골자

충청북도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건축법령의 조문 개정
(별첨 신, 구조론 대비표 참조)

5. 검토 의견

건축 관련 법령의 개정 시행에 따른 충청북도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건축법령의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개정조례안 및 참고자료 : 별 첨